

옥외광고물 전수조사

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(신고) 사항 및 설치·규격·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.

- 조사기간 : 2020년 3월 ~ 5월
- 조사대상 : 관내 옥외광고물
(벽면이용간판, 돌출간판, 지주이용간판, 옥상간판, 현수막게시시설)
- 문의처 : 통영시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(☎055-650-5860)



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

「옥외광고물 법」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(신고) 받지 않았거나, 연장허가(신고)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양성화(합법화)를 실시합니다.

- 신청기간 : 1차 2020년 5월 ~ 6월 (2개월), 2차 2020년 7월 ~ 10월 (4개월)
- 신청대상 : 벽면이용간판, 돌출간판, 지주이용간판, 옥상간판, 현수막게시시설
- 법적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허가(신고)를 받지 않은 광고물
- 표시 기간 만료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
- 신청인 : 광고주(간판 소유주) 또는 옥외광고사업자
- 접수기관 : 통영시청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
- 구비서류 : 통영시 홈페이지(www.tongyeong.go.kr) 내려받기 또는 도시재생과·읍면동에서 제공
- 옥외광고물등 표시(허가·신고·연장)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
- 옥외광고물 설치 승낙서 1부(건물주에게 간판 사용 승낙을 받아야함)
- 수수료 : 1차 전부 면제(무료)
2차 허가(신고) 수수료 면제(무료) / 단, 안전점검 대상인 경우 수수료는 별도 납부

순차	허가(신고) 수수료	안전점검 수수료
1차 (5월 ~ 6월)	면제	면제
2차 (7월 ~ 10월)	면제	있음
양성화 기간 이후	있음	있음

※ 양성화 기간 이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처분(이행강제금부과, 강제철거, 고발 등) 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

- 문의처 : 통영시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(☎055-650-5860)